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9 - 57 - 303호

안 건 명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9. 11. 22.

###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유

### I.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18.6.27. 기준)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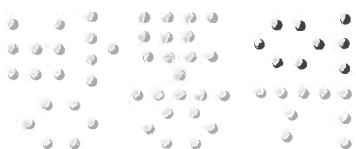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이 보관, 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19건이 관리자 실수로 인하여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피심인의 신고(2018. 6. 25.)를 접수하였다.

※ 유출인지 : 2018.6.22. 김○○이사가 ‘                    ’코인을 핫월렛에서 회사의 콜드월렛으로 옮긴 후 임직원간의 처리결과(엑셀파일명 :                    )를 개인적인 카톡방(약 20명, 애널리스트, 가상통화투자자 등)에 실수로 업로드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피심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고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해킹 경로 파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를 조사(2018. 6. 26. ~ 2018. 6. 27.)한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018. 6. 27. 현재 아래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 정보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경로

1) 개인정보 유출규모

피심인은 회원 19명의 이메일, ' '코인 지갑주소, 암호화키(private Key)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개인 카톡방에 업로드하여 노출하였다.

2) 유출 경로

피심인은 2018. 6. 22. 피심인 소속 김○○ 이사가 ' '코인을 핫월렛에서 회사의 콜드월렛으로 옮긴 후 임직원간 처리 결과(엑셀파일명: , 19명)를 카톡방에 공유하려다가 개인적인 카톡방에 업로드하여 애널리스트, 가상통화투자자 등(카톡방9, 약 20명)에게 노출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1)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제1항}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2018. 6. 22. 알았음에도 3일이 경과한 2018. 6. 25.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지한 사실이 있다.

<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이용자 통보 현황 >

구분	신고 및 통보 내용	신고 및 통보
인지	- 김○○ 이사가 개인적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엑셀 파일을 실수로 공유	2018.6.22. 20시경
홈페이지 공지	- 홈페이지에 해당 유출 사실에 대하여 공지(공지 사항은 회원로그인시 볼 수 있음)	2018.6.22. 22시경
노출 조치	- 잘못 공유된 단체방 사람들을 다 나가게하여 단체방 삭제	2018.6.23.
이용자 통보	-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하여 19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8.6.25. 14:38~
유출신고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2018.6.25. 18:26

2) 개인정보의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하지 아니한 행위

(계좌번호 암호화) 피심인은 출금 처리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계좌번호 2,334건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table : users)에 저장하면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피심인은 회원 19명의 이메일, '카르마'코인 지갑주소, 암호기(privacte key)가 적힌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 후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6. 1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 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7. 1.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2016. 9. 23. 이전에는 '유출' 대신 '누출' 이라고 규정했었는데,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이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 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의2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의2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제14조의2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제14조의2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제2호)’,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 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좌번호 등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6조제2항에 대해 “개인정보 유·노출 시에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알고리즘(128비트 이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4항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활성화하고나 개인정보의 저장형태가 오피스 파일 형태일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MS Windows 등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활용” 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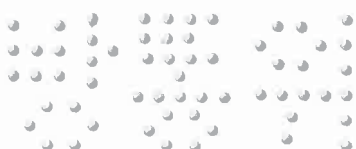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제1항}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이 2018. 6. 22.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 하지 아니한 행위

(계좌번호 암호화) 피심인이 이용자의 계좌번호 2,334건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table : user)에 저장하면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피심인이 회원 19명의 개인정보(이메일, ' '코인 지갑주소, 암호키(privacte key))가 적힌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4호, 고시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유출신고	§27조의3①	§14조의2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통지·신고한 행위
	암호화	§28①4호	§15④2호	이용자의 계좌번호 등에 대해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DB에 저장한 행위(고시§6②)
	암호화	§28①4호	§15④4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고시§6④)

## IV. 시정조치 명령

###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 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규모(19건)가 적고, 위반행위 관련한 매출액( )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시정명령으로 갈음한다.



## VI.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제1항,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하.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2호의3	1,000	2,000	3,000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의 정도	나.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b>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 제2호 하목</b>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한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7의3①	1,000만원	300만원	없음	1,300만원
§28①4호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1,800만원

####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VII. 고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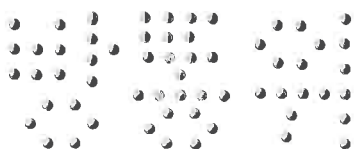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피심인을 같은 법 제73조(벌칙) 및 제69조의2(고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 VIII.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1월 22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석 진



위원

허 욱



위원

표 철 수



위원

김 창 룡

